2005. 11. 23(수) 10:00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# 심사보고서

□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수정안

총 무 위 원 회

# □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수정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16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의안번호 : 제2005 - 62호

라. 상정일자 : 2005. 11. 21

# 2. 수정안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수정안 제안이유

○ 현 고제보건지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 래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,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 위치는 주민 들의 접근조건이 불리하고 주차공간도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장기적 인 관점에서 적정위치를 재검토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하여 공 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.

#### 다. 주요골자

# ○ 당초안

구분	소재지	물건	수량 (m²)	예정금액 (백만원)	비고
취득	고제면 농산리 200-19	건 물	339.12 (1층259)	552,637	철콘스라브조(2층)

#### ○ 수정안

구분	소재지	물건	수량 (m²)	예정금액 (백만원)	비고
계				573,565	
건물	고제면 농산리 754-1외	철콘스라브	339	552,637	철콘스라브조(2층)
토지	3필지		1,126 (341평)	20,928	공시지가 기준표시
	고제면 농산리 754-1	답	872	11,336	
	754-4	답	234	9,032	
	1855-2	대지	20	560	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현재 고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(2005.6.16) 심의과정에서 신축하려는 보건지소의 현 위치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조건이 불리하여 위원회에서는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 요구 하면서 심 의를 보류한 안건임.
- 변경된 위치는 면사무소 및 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형상이 양호하며, 평탄한 것으로 보건지소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.
- 고제보건지소의 건립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하여는 약7천만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는 전액 추경예산에서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.
- 건물준공 후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이 마련되어 있 는 않은 것으로 군에서 잡종재산으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손실

- 을 초래할 것이므로 처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동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건지소 신축에는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